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7065    |
| 의 퇴 인 | 문진석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6.4.24. |
| 추계번호  | 26D1128    |

#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5조의3(친환경 현수막 지원) |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은 친환경 소재(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 <sup>1)</sup> 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)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표시·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5조의3(친환경 현수막 지원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 등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현수막을 표시·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법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자치단

---

1) 제17조(환경표지의 인증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(기기,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 있다.  
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 
 ③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·폐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게 될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예상하기 어렵고, 개정안은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내용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친환경 현수막 표시·설치에 대한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
- 참고로,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
<참고: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내용>

**「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**

제22조(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를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,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군·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·구에 지원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친환경 소재(생분해, 산화생분해,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)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·구에 지원할 수 있다.

**「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**

제12조(현수막의 표시방법)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수막의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~7. (생략)

8. 현수막은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(이하 “친환경 소재”라 한다)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(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광고물등의 조사·정비·수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옥외광고물의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하여 “대전광역시 옥외광고대상”을 선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, 부상 및 시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광고물등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**「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**

제22조의2(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) ①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(재활용이 용이하거나 에너지·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·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, 공공단체(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·공단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정·고시된 출자·출연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단체,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)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·법인·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.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전상욱 | 김안나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|
| 전상욱 | 02-6788-4673 | flyhigh@assembly.go.kr |